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6. 21 선고 2022가단9131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준, 김혜리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3. 5. 31.

판 결 선 고 2023. 6. 21.

주 문

-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C(주민등록번호 1 생략) 사이에 2022. 5. 25.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C(주민등록번호 1 생략)에게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등기소 2022. 5. 26. 접수 제16038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말소등기절차의 상대방은 오기로 보아 정정한다).

이 유

원고가 2018. 11. 1.부터 C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다가 2022. 8. 31.경 퇴직한 사실, C는

2020년 1월분부터 2022년 5월분까지 원고의 임금 합계 21,979,344원(1월분 6,428,572원 + 2월분 4,157,143원 + 3월분 3,808,843원 + 4월분 3,792,353원 + 5월분 3,792,433원)을 체불하였고, 원고의 퇴직 당시 체불임금은 합계 52,694,515원에 달하였는바, 원고는 C를 상대로 이 법원 2022가단88104호로 임금 청구 소를 제기하여 2023. 1. 31. 대지급금(1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42,694,515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2023. 3. 17. 확정된 사실, 한편, C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2022. 5. 25.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2022. 5. 26.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갑 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각 과세정보 제출명령 결과,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원고의 C에 대한 임금 채권의 기초관계가 성립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C는 이미 원고에 대하여 상당한 임금을 체불하고 있었는바, 원고의 C에 대한 위 임금 채권(앞서 본 바와 같은 21,979,344원 상당)은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결국, C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 감소를 초래하는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와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제2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조형우

별지

목 록

(부 동 산 외 표 시)

1. 광명시 대 126㎡

2.

[도로명주소]

광명시

지상 연와조 스라브층 평가권

주택1동

건평 56.6㎡

세멘박들조 지하실 26.55㎡

세멘박들조 스라브층 변소 1.42㎡

